#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

[부산지방법원 2021. 11. 26. 2020나49515]



## 【전문】

【원고, 피항소인】보승빌딩관리단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운, 담당변호사 신동엽) 【피고, 항소인】피고 1 외 1인 (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길) 【제1심판결】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. 4. 1. 선고 2019가단103209 판결 【변론종결】2021. 10. 29.

### 【주문】

#### 1

- 1.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- 가. 원고에게,
- 1) 피고 1은 485,7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3. 28.부터,
- 2) 피고 2는 38,536,838원 및 그 중 14,301,449원에 대하여는 2019. 12. 19부터, 24,235,389원에 대하여는 2021. 10. 22.부터
- 각 2021. 11. 26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- 나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- 2.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2/3는 원고가,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의 1/3은 원고가,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.
- 3. 제1의 가.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원고에게, ③ 피고 1은 1,435,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7. 29.부터 2019. 3. 26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 ◎ 피고 2는 61,336,262원 및 그 중 37,100,873원에 대하여는 2019. 12. 19.부터, 24,235,389원에 대하여는 2021. 10. 19.자 청구취지·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(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변경 없이 청구원인만 확장하였다가, 이 법원으로부터 석명준비명령을 받고 위 청구취지·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).2.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원고에게, ③ 피고 1은 1,435,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7. 29.부터 2019. 3. 26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 ◎ 피고 2는 61,336,262원 및 그 중 37,100,873원에 대하여는 2019. 12. 19.부터, 24,235,389원에 대하여는 2021. 10. 19.자 청구취지·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(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변경 없이 청구원인만 확장하였다가, 이 법원으로부터 석명준비명령을 받고 위 청구취지·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).2.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원고에게, ③ 피고 1은 1,435,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7. 29.부터 2019. 3. 26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 ◎ 피고 2는 61,336,262원 및 그 중 37,100,873원에 대하여는 2019. 12. 19.부터, 24,235,389원에 대하여는 2021. 10. 19.자 청구취지·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(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변경 없이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청구원인만 확장하였다가, 이 법원으로부터 석명준비명령을 받고 위 청구취지·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).2.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원고에게, ③ 피고 1은 1,435,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7. 29.부터 2019. 3. 26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 ⑥ 피고 2는 61,336,262원 및 그 중 37,100,873원에 대하여는 2019. 12. 19.부터, 24,235,389원에 대하여는 2021. 10. 19.자 청구취지·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(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변경 없이 청구원인만 확장하였다가, 이 법원으로부터 석명준비명령을 받고 위 청구취지·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).2.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#### [이유]

#### 11. 기초사실

- 가. 보승빌딩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은 부산 북구 (주소 생략) 지상에 2003. 1.경 제1,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지하 1층, 지상 6층(지하1층 461.44㎡, 1층 523.88㎡, 2층 531.93㎡, 3층 476.02㎡, 4층 442.82㎡, 5층 347.57㎡, 6층 312.52㎡) 규모로 건축된 집합건물이고, 14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다.
- 원고는 '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'(이하 '집합건물법'이라 한다)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설립 된 단체이다.
- 나.(대법원 판결의 피고)는 2009. 8. 19. 임의경매를 통해 이 사건 건물 중 (호수 1 생략)(전유부분 (면적 1 생략)), (호수 2 생략)(면적 2 생략), (호수 3 생략)(면적 3 생략), (호수 4 생략)(면적 4 생략)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위 건물에서 약 51%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.
- 위 피고는 2009. 12.경부터 위 (호수 1 생략), (호수 2 생략) 등에서 '〇〇〇'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2011. 4.경 폐업하였다.

다.

- 피고 2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0년경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소외 2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소외 2가 2012. 9.경 사망하였고, 그 후에는 (호수 5 생략)의 구분소유자인 소외 3이 적법한 선임절차 없이 사실상 관리인의 직무를 집행하였다.
- 라.피고 1은 피고 2의 남편인데, 2013. 1.경 이 사건 건물에서 위 피고가 과반수 지분권자임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자신이 사실상의 관리인을 맡겠다며 소외 3으로부터 관리비 통장·도장, 회계장부 등을 받아갔다.
- 피고 1은 구분소유자들과 임차인들의 묵시적인 승인 하에 관리비 부과내역을 공고하고 자신 명의의 부산은행계좌(계좌 번호 생략)로 관리비를 받는 등 관리인의 직무를 집행하였다.
- 마. 그런데 피고 1이 피고 2의 2011. 6.경부터 2012. 11.경까지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는 등의 업무처리에 대하여, 구분소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.
- 구분소유자들은 2013. 11. 20. 부산지방법원에 피고 1을 상대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(2013카합1390호)을 하였고, 위 법원은 2014. 3. 27. "관리인 해임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"는 결정을 하였으며,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이에 구분소유자들은 2014. 4. 24. 부산지방법원에 원고, 피고 1을 상대로 관리인 해임청구의 소(2014가합6070호)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4. 11. 21. "피고 1을 피고 보승빌딩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.
  - "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- 바.피고 2는 위 (호수 1 생략), (호수 2 생략), (호수 3 생략), (호수 4 생략)에 대한 2011. 6.분부터 2012. 11.분까지 및 2013. 8.분 이후의 공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는데, 미납내역은 별지 표(기재된 "월"은 부과대상 기간이고, 납부기한은 그 다음 달 하순경이다) 기재와 같고, 합계금액은 61,336,262원이다.

#### [이유]

#### 】1. 기초사실

- 가. 보승빌딩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은 부산 북구 (주소 생략) 지상에 2003. 1.경 제1,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지하 1층, 지상 6층(지하1층 461.44㎡, 1층 523.88㎡, 2층 531.93㎡, 3층 476.02㎡, 4층 442.82㎡, 5층 347.57㎡, 6층 312.52㎡) 규모로 건축된 집합건물이고, 14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다.
- 원고는 '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'(이하 '집합건물법'이라 한다)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설립 된 단체이다
- 나.(대법원 판결의 피고)는 2009. 8. 19. 임의경매를 통해 이 사건 건물 중 (호수 1 생략)(전유부분 (면적 1 생략)), (호수 2 생략)(면적 2 생략), (호수 3 생략)(면적 3 생략), (호수 4 생략)(면적 4 생략)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위 건물에서 약 51%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.
- 위 피고는 2009. 12.경부터 위 (호수 1 생략), (호수 2 생략) 등에서 '〇〇〇'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2011. 4.경 폐업하였다.

다.

- 피고 2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0년경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소외 2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소외 2가 2012. 9.경 사망하였고, 그 후에는 (호수 5 생략)의 구분소유자인 소외 3이 적법한 선임절차 없이 사실상 관리인의 직무를 집행하였다.
- 라.피고 1은 피고 2의 남편인데, 2013. 1.경 이 사건 건물에서 위 피고가 과반수 지분권자임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자신이 사실상의 관리인을 맡겠다며 소외 3으로부터 관리비 통장·도장, 회계장부 등을 받아갔다.
- 피고 1은 구분소유자들과 임차인들의 묵시적인 승인 하에 관리비 부과내역을 공고하고 자신 명의의 부산은행계좌(계좌 번호 생략)로 관리비를 받는 등 관리인의 직무를 집행하였다.
- 마. 그런데 피고 1이 피고 2의 2011. 6.경부터 2012. 11.경까지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는 등의 업무처리에 대하여, 구분소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.
- 구분소유자들은 2013. 11. 20. 부산지방법원에 피고 1을 상대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(2013카합1390호)을 하였고, 위 법원은 2014. 3. 27. "관리인 해임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"는 결정을 하였으며,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- 이에 구분소유자들은 2014. 4. 24. 부산지방법원에 원고, 피고 1을 상대로 관리인 해임청구의 소(2014가합6070호)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4. 11. 21. "피고 1을 피고 보증빌딩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"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바.피고 2는 위 (호수 1 생략), (호수 2 생략), (호수 3 생략), (호수 4 생략)에 대한 2011. 6.분부터 2012. 11.분까지 및 2013. 8.분 이후의 공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는데, 미납내역은 별지 표(기재된 "월"은 부과대상 기간이고, 납부기 한은 그 다음 달 하순경이다) 기재와 같고, 합계금액은 61,336,262원이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